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2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김한규·박상혁·박정현

이기헌 • 박민규 • 진선미

위성락 · 모경종 · 강경숙

강유정・정을호・조 국

민병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불공정 행위로부터의 주된 보호 대상을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서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지역본부를 보 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계약"을 "계약(이하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으로, "대행"을 "대행(이하 "가맹대행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 호"로 한다.

-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대행사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가맹지역본부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지역본부에게 불이익을 주 거나 가맹지역본부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 2. 가맹대행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지역본부에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행위로서 가맹대행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2항"으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 -----계약(이하 "가맹대 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 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 행계약"이라 한다)-----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 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 ·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행(이하 "가맹대행사업"이라 한다)-----.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신 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서 가맹대행사업을 저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가맹지역본부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전 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 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u>제12조제1항</u>, 제12조의2제1항· 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 당하게 가맹지역본부에게 불 이익을 주거나 가맹지역본부 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 속하는 행위
- 2. 가맹대행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지역본부에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행위로

 서 가맹대행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u>3</u>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u>ই</u> -						

세33조(시정조치) ①
<u>제12조제1항 · 제2항</u>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 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 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 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 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영업수익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100元(社名日) (1)
제
<u>-"</u> 12조제1항·제2항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수 있다

2	\sim	(6)	(생	략)
_		<u> </u>	\ U	1/

-,
② ~ ⑥ (현행과 같음)